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동향에 관한 고찰

김 현 수 · 박 춘 식*

요 약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에 착수하여, 2003년 5월 30일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5법안’을 공포하였다. 금번 법제정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법제를 제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종합적·일체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과정과 새로이 성립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I. 서 론

일본은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이 현저하게 확대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을 통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는 동시에 개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에 관한 법제 정비에 노력해 왔다.

1999년 참의원 본회의시 주민기본대장법 일부개정법안 질의에 대하여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정비등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리답변을 시작으로 추진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정비는 2003년 5월 30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5법안’을 공포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이전의 관련 법체계, 정비의 경과 및 새로이 성립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시 시사점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II.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이전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이전,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제도는 크게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와 민간사업자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

제도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 국가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국가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제도로는 1988년에 제정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988년 법률 제95호)에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하여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공시, 처리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시 정정 등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공공단체의 경우, 1999년 4월 1일 현재, 총 2,386개의 지방공공단체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규칙, 규정 등을 제정하고 있었다.

2.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민간사업자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살펴보면,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1999년 7월, 취업안정법(법률 제141호) 및 노동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취업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1985년 법률 제88호)이 개정되어, 취업소개사업자에 있어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 국가보안기술연구소({jura, csp}@etri.re.kr)

(표 1) 2000년 이전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 일람

	국가·지방공공단체	민간사업자 등
개인정보보호제도	<p>(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p>(지방공공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규정 	<p>(구직자등의 개인정보의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안정법,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 노동자의 취업조건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 <p>(신용정보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부판매법, 대금법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 가이드라인 <p>(의료정보의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의료방사선기사법 등 ○ 의료법, 가이드라인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 JIS, 마크부여제도(민간단체 등)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관한 불법행위) ○ 형법(명예훼손죄, 절도죄, 횡령죄 등), 부정액세스행위금지법 ○ 저작권법, 특허법 등 	행위로 되는 경우가 있었다.

신용정보에 관해서는 할부판매법(1961년 법률 159호) 및 대금(貸金)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1983년 법률 제32호)에서, 신용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정하고 있었다. 또 관계사업자단체 등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었다.

의료정보의 경우는 형법 이외에 의료방사선기사법(1951년 법률 제226호), 감염증의 예방 및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14호) 등의 법률에서 자격 또는 업무에 차안한 비밀준수의무규정이 만들어져 있었으며, 의료정보의 제공에 관해서는 의료법(1948년 법률 제205호)의 규정 외에, 사단법인 일본 의사회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있었다.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으로서는 통상산업성 및 우정성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JIS(일본 공업규격)가 제정되어 있어, 민간 사업자 단체 등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한 사업자에게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도 실시되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의 개시 등에 관해서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민법(명치 29년 법률 제89호)상의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부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해서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매체의 불법영득과 관련하여 형법상의 절도죄, 횡령죄가 되는 경우나 부정액세스 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28호)에 의하여 금지된

한편, 저작권법(1970년 법률 제48호)이나 특허법(1969년 법률 제121호)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경우가 있었다.

III.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경과

일본정부는 1990년대 인터넷 보급 및 이용이 확대되고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개인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998년 1월, 내각내에 정보통신기술본부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着手하였다.

그리고 1999년 7월,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전략본부(IT 전략본부)내에 '개인정보보호검토부회'를 설치한 이후, 2000년에 '개인정보보호법제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왔다.

2001년 3월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안(이하 '舊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안'이라 함)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권 및 언론 등이 기본 5원칙(이용 목적에 의한 제한, 적절한 방법에 의한 취득, 내용의 정확성 확보, 안전보호조치의 실시, 투명성의 확보)은 표현·보도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심의를 거부함으로써 성립이 저연되자 법 폐기를 결정하였다.

이후, 일본정부는 개인정보를 지자체와 중앙정부 컴퓨터로 연결하는 주민등록 네트워크제도를 2003년 8월부터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정비가 시

(표 2) 일본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 정비 경과

연도 및 일시	내 용
1999년	6월 28일 참의원 본회의시 주민기본대장법 일부개정법안 질의에 대하여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정비 등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리답변'
	7월 23일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개인정보보호검토부회' 1차 회의
	11월 19일 개인정보보호검토부회 '일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존재에 대하여(중간보고)'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기본원칙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 분야를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
	12월 3일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결정 '일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확립에 대하여' * 개인정보보호검토부회 중간보고서를 최대한으로 존중하여, 일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범위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 검토를 진행
2000년	2월 4일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개인정보보호법제화 전문위원회' 1차 회의
	6월 2일 개인정보보호법제화 전문위원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에 관한 대강안(중간정리)'
	10월 11일 개인정보보호법제화 전문위원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에 관한 대강'
	10월 13일 정보통신기술(IT) 전략본부 결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제의 정비에 대하여'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에 관한 대강'을 최대한 존중하고, 차기 통상국회에 제출을 목표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제의 입안작업을 진행
2001년	3월 27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출(제151회 국회)
2002년	3월 15일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4법안' 제출(제154회 국회)
	12월 6일 '여당 3당 수정요강' 발표 * 여당 3당으로서는 정부원안에 대한 수정방침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시하고, 법안을 차기 통상국회에 재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함
	12월 13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심의 미완료 폐안(제155회 국회)
2003년	3월 7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재제출(제156회 국회)

급하다고 판단하고 舊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안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기본 5원칙을 삭제하고 동 법적 용대상을 보강한 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는 2003년 3월 7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5가지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3월 27일 각의에서 결정되어, 5월 23일 법률로서 성립, 5월 30일 공포되었다.

N.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금번 일본이 정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기본법제로서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의 책무, 기본방침 책정,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책무 등을 다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로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 외에도 '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설치법',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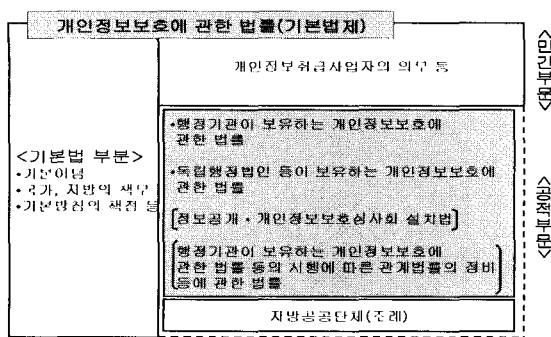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본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 제3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 등, 제4장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협력,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이란 제하를 가지고 총 59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총 칙

1.1.1 목적과 기본이념(1조, 3조)

제1장 총칙에서는 본 법이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이 현저히 확대되어 감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존중의 이념하에 신중히 취급되어야 하며, 적정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본 법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그림 1) 일본 개인정보보호 관련 5법의 관계

1.1.2 정의(2조)

한편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의 집합물로, ① 특정의 개인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 ② 전 호에서 든 것 이외에 특정의 개인정보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란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단지 다음에 열거하는 자는 제외한다. ① 국가기관, ② 지방공공단체, ③ 독립행정법인, ④ 그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양 및 이용방법으로 보아 개인의 권리이익을 해할 염려가 적은 자로서 정령(政令)에서 정한 자

'개인 데이터'란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등을 구성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보유개인 데이터'란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개시, 내용의 정정, 추가 또는 삭제, 이용의 정지, 소거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인 데이터이다.

1.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

1.2.1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4조, 5조)

국가는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지방공공단체의 경우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구역의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더불어 이것을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1.2.2 법제상의 조치 등(6조)

정부는 국가의 행정기관,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목적, 성격 및 업무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이 확보되도록 법제상의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성질 및 이용방법에 따라, 적정한 취급, 엄격한 실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보호를 위한 각별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1.3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시책 등

1.3.1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7조)

시책의 종합적·일체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을 국민생활 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각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 방향
- 국가가 강구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독립행정법인 등이 강구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및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가 강구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고충의 원활한 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인정보보호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

1.3.2 국가의 시책(8조~10조)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책정하거나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 및 국민 또는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확보에 관해서 행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사업자 등이 강구해야 하는 조치의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의 책정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사업자와 본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충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1.3.3 지방공공단체의 시책(11조~13조),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협력(14조)

지방공공단체는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성질, 당해 개

인정보를 보유하는 목적 등을 감안하여 그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그 구역내의 사업자 및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업자와 본인 사이에 발생하는 고충처리의 일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에 관하여 상호협력한다.

1.4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

1.4.1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1.4.1.1 이용목적의 특정, 이용목적에 의한 제한 (15조, 16조)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 그 이용목적을 가능한 특정하여야 하고,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이용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특정된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없다. 또한 합병 그 밖의 사유에 의해 다른 개인정보취급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하는 것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승계전에 당해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취급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 법령에 근거한 경우

-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때

- 국가기관,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에 따라 당해 사무의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1.4.1.2 적정한 취득, 취득시 이용목적의 통지 등 (17조, 18조)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부정한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의 취득이 금지되고, 개인정보 취득시 이용목적을

통지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본인으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용목적을 사전에 본인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용목적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는 것에 따라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그 밖의 권리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1.4.1.3 데이터 내용의 정확성 확보(19조)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 데이터의 정확성, 최신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4.1.4 안전관리조치, 종업자, 위탁처의 감독 (20조~22조)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데이터의 누설, 멀실 또는 훼손의 방지 기타 개인 데이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종업원·위탁처에 대하여서도 필요하고 적절한 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1.5 제3자 제공의 제한(23조)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편,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 데이터에 관해서 본인의 요구에 따라서 당해 본인이 이식별되는 개인 데이터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정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본인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는 당해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것
-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 데이터의 항목
- 제3자에 대한 제공의 수단 또는 방법
- 본인의 요구에 따라 당해 본인이 이식별되는 개인 데이터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정지하는 것

1.4.1.6 공표, 개시, 정정, 이용정지 등 (24조~27조)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보유 개인 데이터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해서 본인이 알 수 있는 상태(본인의 요구에 응하여 지체없이 회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두어야 한다.

- 당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모든 보유 개인 데이터의 이용목적
- 그 밖에 보유 개인 데이터의 적정한 취급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령(政令)으로서 정한 것

또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본인으로부터 당해 본인이 식별되는 보유 개인 데이터의 이용목적의 통지를 요구받은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당해 본인이 식별되는 보유 개인데이터의 이용목적이 명확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하지 않는 뜻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본인으로부터 당해 개인이 식별되는 보유 개인 데이터의 개시(당해 본인이 식별되는 보유 개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때에 그 뜻을 알려주는 것을 포함한다)를 요구받은 때는 본인에 대해 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보유 개인 데이터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그 밖의 권리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본인으로부터 당해 본인이 식별되는 보유 개인 데이터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해 보유 개인 데이터의 내용의 정정, 추가 또는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 등에 관해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행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당해 보유 개인 데이터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본인으로부터 이용목적에 의한 제한 등에 위반하여 취급되고 있다는 이유 또는 적정한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하는 이유로 당해 보유 데이터의 이용정지 또는 소거를 요구받은 경우에 있어, 그 요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명된 때에는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지체없이 당해 보유 개인 데이터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일정부분의 예외가 존재한다.

1.4.1.7 고충의 처리(31조)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고충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체제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1.4.1.8 주무대신의 관여(32조~35조)

주무대신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

하고 있는 이 절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의무규정(노력의무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개인의 권리이익보호를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 권고에 따르지 않는 일정한 경우에는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주무대신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4.1.9 주무대신(36조)

개인정보취급사업자와 관련된 주무대신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행한 개인정보의 취급 중 고용관리에 관한 것에 관해서는 후생노동대신 및 당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행한 사업 등의 소관대신이 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규정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는, 내각 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4.2 민간단체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의 추진

1.4.2.1 단체의 인정(37조), 대상사업자(41조)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확보를 목적으로, 고충처리 등을 수행하는 단체는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는 당해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의 구성원인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또는 인정업무의 대상이 되는 것에 관해서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를 대상사업자로 하여야 하고, 대상사업자(단체의 구성원 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공표하여야 한다.

1.4.2.2 개인정보보호지침(43조)

인정개인정보보호단체는 대상사업자의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의 확보를 위하여, 이용목적의 특정,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본인의 요구에 응하는 절차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이 법률 규정의 취지에 따른 지침을 작성,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지도, 권고 그 밖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잡 칙

보도, 저술, 학술연구, 종교활동, 정치활동 등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보도기관, 저술을 업으로 하는 자, 학술연구기관, 종교단체, 정치단체에 관해서는 제4장의 적용을 제외(50조 1항)하며, 이들 주체는 안전관리,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스스로 강구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노력(50조 3항)한다.

1.6 부 칙

공포일(03년 5월 30일)로부터 시행하되, 제4장에서 제6장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2년 이내에 시행(부칙 1조)한다. 또한, 내각부의 소장사무 등에 본법 시행관계의 사무를 추가(부칙 7조)한다.

2.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모든 행정기관(회계검사원을 포함)에서 행정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에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이란,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범위내에서 보유를 제한하고, 서면에 의한 직접 취득시에 이용목적을 명시하며, 이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범위 내에서 사실과 합치하도록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확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시청구제도, 정정청구제도, 이용정지청구제도 등과 이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독립행정법인등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 '정비법' 개요

독립행정법인등개인정보보호법은 대상을 독립행정법인, 특수행정법인 및 인가법인인 것으로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132개의 법인) 취급하여야 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정보, 취급의 범위, 관리방법, 본인의 관여, 구제제도, 벌칙은 행정기관법제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에서는 2001년 설치된 정보공개심사회를 개편하고,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정보공개법제의 개시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신청에 관한 자문과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시, 정정, 이용정지 결정 등의 불복신청에 관한 자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정비법'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

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설치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V. 결 론

종래 일본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가 별도로 제정,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사회화가 가속되면서,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등 개인정보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도출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종래 개별 입법을 통하여 다투고 있던 개인정보관련법제를 정비하였다. 금번 정비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차원의 종합적·일체적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본법제를 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제를 채택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하게 되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이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 추진에 관한 기본적 방향, 국가·지방공공단체·독립행정법인·개인정보취급사업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일반규정의 예외를 동시에 규정하여, 특수한 목적을 가진 특별법 규정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며, 향후 관련 개별 입법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정비 방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정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이 주장되고 있는 것이 기본법제의 재정에 대한 요구일 것이다.

이는 현재 산재되어 있는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하에서는 새로이 대두되는 수 많은 개인정보 관련 쟁점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법제가 제정된다면, 이를 통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격차나 가치의 모순 등을 제거할 수 있고, 기존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국민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본법제는 정보화사회에서 새

로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개인정보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기본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향후 개별 입법시 일관되고, 통일된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제 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内閣内政審議室 個人情報保護担当室, 我が國における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現行制度等の概要, 第2回 個人情報保護法制化専門委員會, 2000. 2. 7.
- [2] 首相官邸, 個人情報保護基本法制に關するこれまでの経緯, <http://www.kantei.go.jp>.
- [3] 総務省, 個人情報保護 關連5法の概要, 2003.5.
- [4] 牧野二郎, 市民力としてのインターネット, 岩波書店, 1998.
- [5] 田崎康, 横山経通, インターネット法, 商事法務研究會, 1999.
- [6] 이인호,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 제, 국가인권위원회, 2003.8.
- [7] 個人情報保護法制化専門委員會, 個人情報保護基本法制に關する大綱案(中間整理), 2000. 6.2.
- [8] 김현수, 일본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안전·신뢰성 확보 정책, 정보보호학회지 제12권 제6호, 2002.12

〈著者紹介〉

김 현 수 (Hyun-soo Kim)
정회원

1997년 2월 : 부산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99년 2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2000년 2월 - 2001년 2월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원

2001년 3월 - 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 정보보호 정책, 전자거래법, 지적재산권

박 춘 식 (Choon-sik Park)
평생회원

1995년 : 일본 동경공업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공학박사

1989년 - 1990년 : 일본 동경공업대학교 초빙연구원

1982년 - 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2003년 - 현재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

1990년 - 현재 :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

관심분야 : 암호분야, 정보보증분야